

안양시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규정

제정 1992. 8. 11 의회규정 제3호
개정 2005. 4. 22 의회규정 제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양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내 의회간행물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간행물”이라 함은 의회에 관련된 사항의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.
2. “공보”라 함은 의회활동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회운영 위원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약간인의 위원을 학술연구기관등 외부의 전문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심의조정
2. 편집방안의 심의조정
3. 간행물의 명칭, 규격, 발행주기, 배부방침에 관한 사항
4. 간행물의 논제 및 필자선정, 원고수집, 교열에 관한 사항
5. 기타 편집, 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, 단,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회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.

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 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. <개정 2005. 4. 22>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4. 22 의회규정 제6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